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611

재출년월일 : 2000. 12.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개정이유

○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른 용어정리

○ 장학생선발시 읍·면·동장의 추천인원이 예산의 범위이내인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

2. 주요골자

○ 조례제2조(정의)제1호 및 제6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제1항제1호의 " 생활보호대상자" 를 "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" 로 용어 변경

○ 조례제2조(정의)제3호의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

○ 조례제9조(장학생의 선발)제1항제2호의 규정중 읍·면·동장 추천인원이 제8조의 규정에의한 예산의 범위 이내인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

3. 관계법규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6조

붙 임 : 1. 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3. 관계법령 사본 1부

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제1호 "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" 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.

제2조 제3호중 "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"를 "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" 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제1호중 "생활보호대상자" 를 "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" 로 한다.

제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읍·면·동장 추천인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 이내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(생략) 1."생활보호대상자"라 함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말한다. 2.(생략) 3."기타저소득층"이라 함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"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"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. 2.(현행과 같음) 3.----------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-----.
제3조(기금의 조성) (생략)	제3조(기금의 조성)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운용계획) (생략)	제4조(기금의 운용계획)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기금의 관리) (생략)	제5조(기금의 관리) (현행과 같음)
제6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 (생략) 1.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.(생략) 3.(생략)	제6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1.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---------- ---------- 2.(현행과 같음) 3.(현행과 같음)
제7조(장학금의 종류) (생략)	제7조(현행과 같음)
제8조(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) (생략)	제8조(현행과 같음)
제9조(장학생의 선발) ① (생략) 1.(생략) 2. 시장은 장학금지급대상자를 읍·면·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. (단서신설)	제9조(장학생의 선발) ① (현행과 같음) 1.(현행과 같음) 2.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단, 읍·면·동장 추천인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이내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법	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	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
제1장 총 칙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수급권자"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. 2. "수급자"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. "수급품"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. 4. "보장기관"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	**제2조(개별가구)** ①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"개별가구"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. 1.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(동거인을 제외한다) 2.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.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나.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	

국민기초생활보장법	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	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
③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		
제24조(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.	**제36조(차상위계층)** 법 제24조에서 "차상위계층"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.	**제38조(차상위계층조사)**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1.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2.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.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4. 기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

제 315 호 제 천 시 보 2000. 11. 10(금)

입 법 예 고

제천시 공고 제2000-577호

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견을 듣고자 합니다.

2000년 11월 10일

제 천 시 장

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(안)입법예고

1. 조 례 명 :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
2. 개정취지
   - ㅇ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른 용어정리
   - ㅇ 장학생선발시 읍·면·동장의 추천인원이 예산의 범위이내인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
3. 주요내용
   - ㅇ 조례제2조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의 "생활보호대상자"를 "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"로 용어 변경
   - ㅇ 조례제2조제3호의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
   - ㅇ 조례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중 읍·면·동장 추천인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 이내인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
4. 의견제출
   - ㅇ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0년 11월 29일까지 제천시청 사회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(640-6212, 6213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  - ㅇ 의견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성명, 주소, 연락처,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, 기타 참고사항 등의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 1부. 끝